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

의안 번호	370
----------	-----

제출년월일 : 2021. 8.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성 북 구
(문화체육과)

1. 제안이유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조성 추진 근거 및 문화도시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문화도시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3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다.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 라.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의견수렴·기초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8조)
- 마.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안 제15조)
- 바.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 예산팀과 협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7. 15. ~ 8. 4.(20일)

- 예고결과 : 총 1건(법인 1) 의견제출 및 일부 의견 반영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성북 문화 재단	○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1항에서 3항이 위원회 인적 구성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떨어짐으로 문항 축소(3개항에서 2개항으로) 후 수정 변경 요구	○ 반영 - 위원회 인적 구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의견대로 내용 수정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4명 가. 구청장 나. 부구청장 다. 문화도시 사업 담당 국장 라.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 2. 위촉직 위원 21명 이내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공동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두고,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장과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촉직 중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성북 문화 재단	○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4항의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전문분야에서 "역사" 분야 추가 요구	○ 반영 - 역사 분야 또한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전문분야 추가 요청 의견 수렴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2. 문화·예술·관광·도시·역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예술단체 대표 및 문화예술 종사자 4.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5. 성북구의회가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2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2항에서 당연직 위원장의 직무대행은 당연직 부위원장이 하며, 위촉직 위원장의 직무대행은 위촉직 부위원장이 하도록 명시 요구	○ 미반영 - 공동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고 공동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하므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나누어서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음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성북 문화재단	<p>○ 제12조(위원회의 운영) 1항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수정하고 임시회의 소집에 대한 내용 추가 요청</p>	<p>○ 일부반영</p> <p>-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미 위원장이라는 용어에 공동위원장의 의미가 있으므로 변경이 필요가 없으며, 위원장의 임시회 소집에 관한 내용 추가 요청 의견 수렴</p> <p>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기회의 외 임시회의의 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p>
	<p>○ 제12조(위원회의 운영) 4항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변경 요구</p>	<p>○ 미반영</p> <p>-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미 위원장이라는 용어에 공동위원장의 의미가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음</p>
	<p>○ 제15조(운영세칙) 조항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변경 요구</p>	<p>○ 미반영</p> <p>-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미 위원장이라는 용어에 공동위원장의 의미가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음</p>

성북 문화재단	<p>○ 제18조(위탁관리 및 운영) 2항의 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 선정 절차를 생략한다는 문구는 불필요하게 언급된 사항으로 삭제 요청</p>	<p>○ 반영</p> <p>- 센터를 성북문화재단으로 위수탁 시 선정 절차를 따로 밝히 않아도 되므로 조항에 넣은 것은 불필요하게 언급되었다는 의견대로 내용 삭제</p> <p>제18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성북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성북문화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 선정 절차를 생략한다.</p>
---------	---	---

2)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첨부

3) 인권/부패/성별/아동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인권침해 가능성 없음(기타의견 미반영)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구분	검토의견	반영 여부	반영 내용 및 미반영 사유
인권 영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구성에 구민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함 - 구민공동체가 자생적으로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할 것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북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성북구민 또는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됨 - 구민공동체가 자생적으로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가 아닌 구체적인 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 추진사업 진행 시 문화적 약자들을 의도적으로 배려 또는 고려하도록 함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북구 문화도시 추진사업 시 문화적 약자의 입장을 배려 또는 고려하도록 노력할 것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도시 정책은 지역별·문화예술분야별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특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지역발전정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문화도시 조성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지정 및 조성에 관련된 사업
2.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4명

가. 구청장

나. 부구청장

다. 문화도시 사업 담당 국장

라.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

2. 위촉직 위원 21명 이내

가.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나. 문화·예술·관광·도시·역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문화예술단체 대표 및 문화예술 종사자

라.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마. 성북구의회가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2명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공동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두고,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장과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문화도시 사업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정기회의 외 임시회의의 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

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문화도시센터 설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문화도시 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홍보·운영 및 인력관리 등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성북문화재단 또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받은 법인·단체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문화도시 지정신청단계(1차년도) : 문화도시 조성 용역비 및 운영비
- 예비문화도시 단계(2차년도) :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비 및 운영비
- 문화도시 단계(3~7차년도) : 문화도시 사업 추진비 및 운영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각종 사업비 및 운영비

※ 사업규모 : 문화도시로 지정 시 5년간 최대 200억원(국비50%, 지방비5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세입	○국비보조금			2,000,000	2,000,000	2,000,000	6,000,000
	○시비보조금			1,000,000	1,000,000	1,000,000	3,000,000
	○구비	3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300,000
	소계(a)	300,000	1,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13,300,000
세출	○문화도시조성	300,000	1,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13,300,000
	소계(b)	300,000	1,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13,300,000
□총 비용(a-b)		0	0	0	0	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국비				2,000,000	2,000,000	2,000,000	6,000,000
시비				1,000,000	1,000,000	1,000,000	3,000,000
구비	지방세수입	3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300,000
합계		300,000	1,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13,300,000

5. 덧붙이는 의견

-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될 경우 1년은 구비로만 예비사업을 추진
- 예비사업 성과에 따라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비가 결정되며 5년간 최대 국비는 100억원 이내로 지원되어 비용추계 변동 가능
- 국비와 지방비는 50%로 매칭으로 시비보조금의 지원가능 여부는 향후 서울시와의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6. 작성자 : 문화체육과장 홍지현